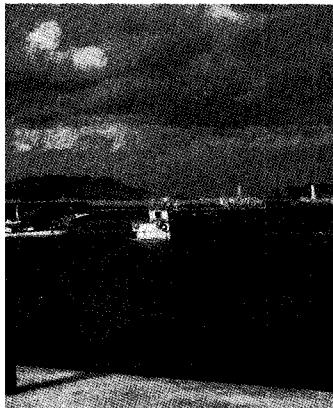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 주민여론 수렴 계획수립 어항협회 설립 법적근거도 마련



어항법이 개정됐다. 어항업계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협안이었던 어항법 개정이 마침내 일단락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 5월18일 본회의를 열어 어항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어항협회 창립을 계기로 어항법 개정이 여론화된 지 실로 6년만의 쾌거이다.

금번 어항법 전면 개정이 갖는 의미를 굳이 찾아보자면 다소 역설적이긴 하나 「어항법 개정」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1969년 어항법이 제정된 이래 무려 2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손질도 없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다른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국제화, 정보화, 첨단 과학화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변신하고 있는 동안, 어항 여건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항 산업만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어항개발의 낙후를 면치 못했던 것은 현실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어항법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은 이같이 크게 변모한 어항 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내용을 정비 보완하는데 역점이 두어졌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어항이 수산진흥과 어촌지역발전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에 걸맞게 어항개발을 촉진하고 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을 크게 분류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어항시설의 범위

를 확대하고 둘째, 어항시설 사업에 민간부문도 참여토록 하며 셋째, 어항의 관리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특기할만한 내용은 어항협회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어항법 제38조로 신설된 어항협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보면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항협회를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용자 편의 도모 시설 범위 늘려

이에따라 그동안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자율단체 성격인 현재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가 특별법에 의한 법정단체 성격의 특수법인체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어항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활동과 기능활성화를 가져온 물론 협회와 어항인의 위상을 대내외에 제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



을 부문별로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어항시설의 범위에 어항기능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복지시설을 새로이 어항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송시설에 주차장, 헬리포트 등을 포함시켰고, 보급시설에 급빙, 전기 수용설비, 선수품 보급장 등을 추가했으며, 활어 일시 보관을 위한 활어 일시 보관 간이시설을 신설하는 등 어항기능의 다양화에 대비한 각종 시설의 근거를 낱낱이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어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8조로 신설된 어항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당해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크게 돋보이는 부분이다.

어항인이면 누구나 경험한 사실이지만 어항시설계획은 현지 주민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밀접돼 있기 때문에 자칫 민원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고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 또한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이를 검토하고 조율하여 시공시 법적, 절차상의 하자를 최소화함으로써 원만한 공사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 가운데 중요한 사안의 하나는 어항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일반 공공사업에 민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그 취지는 정부 예산의 팽창을 막고, 각종 공공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간자본 참가자에는 일정한 내용의 반대급부를 줌으로써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어항공사는 그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막대하며, 일반인의 인식이 덜된 까닭에 그동안 정부추진 공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 제12조 2항과 제25조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사업자도 어항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참여 유도를 좀 더 확대하고 어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25조에서 민간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격 반대급부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려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그같이 배타적이며, 독점적 사용 수익기한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의 인정과 동일하므로 어항시설

현재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가 특별법에 의한 법정단체 성격의 특수법인체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어항 건설과 발전에 관한 활동과 기능 활성화를 가져옴은 물론 협회와 어항인의 위상을 대내외에 제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의 공공성과 수익성, 어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정기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비관리청(민간사업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에서는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즉, 신설된 어항법 제27조에 「관리청은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항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32조에 어항구역 안에서의 각종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3조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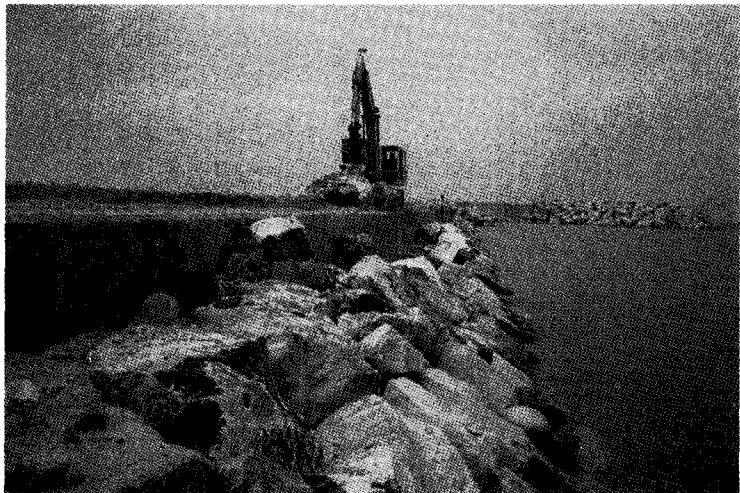
또한 제39조와 제42조에는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어항법상의 별칙 조항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밖에 어항시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및 협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제37조로 신설한 것도 눈에 띠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 가운데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된 조항도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효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제25

조의 비관리청 어항시설 무상 사용·수익기간의 20년 제한 외에도 제5조의 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기관인 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지적, 이를 보다 명료하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거시적 안목으로 어항개발에 힘써야

그 내용은 「심의회 위원은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산청장 또는 직할시장·도지사가 위촉하며, 수산청 소속하의 심의회의 위원은 15인 이내, 직할시장·도지사 소속하의 심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자격과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6조의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권한을 수산청장에서 관리청으로 자구 수정함으로써 1·3종 어항은 수산청장이, 2종 어항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1·3종 어항의 관리는 수산청장이, 2종 어항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게끔 규정한 어항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서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

이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

지엽적인 문제점 등은 어항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보완함으로써 이를 극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 술 밥으로 배가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항법이 전지전능하여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시행하다가 전혀 현실과 괴리될 때 기꺼이 개정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차제에 어항인 모두가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기능은 공적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어항협회가 중추적으로 앞장설 것이 예상되지만 모든 어항인도 이

제는 근시안적인 눈앞의 이익

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 안목으로 어항개발에 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사항이나 쓸데없는 제한이 되고 있는 사항, 혹은 권한을 정부가 가짐으로써 오히려 어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 등은 시행령 마련시 적극적인 목소리로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너무도 많은 시련을 겪고 얻은 결실이라 감회도 크고 보람도 큰 어항법 개정이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 어항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목적일 수도 없고, 목적이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어항인 모두가 이번 기회에 아울러 자각하는 어항법 개정의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